

##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이 연 주\*

지난 약 십년사이 급변하는 한국의 가족환경 속에서 대중매체들은 혼인신고 지연 등을 포함하여 동거(cohabitation)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자의 특성을 검증하고, 한국가족에서 동거가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초점은 아니었지만 동거의 일면을 밝혀줄 수 있는 2개의 전국조사, 즉 혼인신고와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인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들은 대체로 서구문헌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틀을 수용한다. 첫째, 동거는 이혼의 증가 등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되어있다. 혼전동거의 비율이 초혼보다 재혼에서 높았고, 초혼과는 달리 이혼 후 재혼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혼전동거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둘째, 취업이나 학력 등의 면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이 적은 남자들이 많은 남자들에 비하여 결혼보다 동거를 택할 확률이 대체로 높았다. 셋째, 부부간 취업, 교육수준, 연령차이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결혼커플보다 동거커플에서 성역할 평등 혹은 성역할 반전이 더 활발한 것 같다.

학력, 취업, 가족가치관, 연령 등 동거커플들의 특성이 미혼자 및 이혼자뿐 아니라 결혼부부 와도 특별히 유사하지 않다는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동거를 단순히 결혼의 연장선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결혼을 하되 당분간 두고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 때문에 동거가 확산되고 있는지, 그 원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핵심 단어: 동거, 동거자특성, 동거유형, 혼인신고, 재혼

### I. 서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 지연 등을 포함하여 동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중매체들이 전한다(노원명, 2005; 박은경, 2001; 신민섭 2007; 유지영, 2005; 이상균, 2007; 이태수, 2004).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 이후 동거(cohabitation)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고

\* 하와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E-mail: yilee@hawaii.edu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95년도 조사에 의하면 20-44세의 가임연령층 인구의 절반이 동거를 경험하였거나 현재 동거중이라고 한다(Bumpass & Lu, 2000). 본 연구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전국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가족제도에서 동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서구의 가족과는 매우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변화를 서구사회에서 관찰되는 변화들과 묶어서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문화, 기술 수준의 세계화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환경적 변화와 함께 가족제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한다(Bumpass, 1990; Giddens, 2000: 69; Lesthaeghe, 1995, 2007; Raley, 2001). 이 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제도의 여러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간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이혼의 증가가 결혼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그와 관련하여 동거가 증가한다고 본다. 그리고 출산력의 감소나 여성의 노동참여증가 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가족제도변화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가족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추세는 우리나라도 비껴나가는 것 같지 않다. 출산률은 이미 세계 최저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 수년간 이혼율도 세계 최고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결혼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성노동참여는 다소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 2006: 181; 장경섭, 김규원, 김승권, 김홍주, 은기수, 2006; Lee, 2006). 가족을 연구하는 세계화 이론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동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대중매체들은 동거를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여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실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족제도의 한 측면으로 볼 때, 동거는 상당히 불안정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예비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결혼 전에 동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이혼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Casper & Bianchi, 2002; Raley, 2000; Seltzer, 2004; Smock, 2000). 또, 동거관계에서는 재정관리도 개인별로 따로 하는 경향이 있고, 성관계의 배타성도 결혼관계보다 약하다고 한다(Bachrach, Hindin, & Thomson, 2000). 결혼한 배우자들의 권리나 의무는 민법 중 친족법이나 이혼의 사유 등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동거배우자 서로에 대한 권리 의무라든지 가족 친지들에 대한 행동양식 등에 관해서는 사회적 규범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동거자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에 달려있는데 문제는 동거 배우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그 권리 의무에 관한 기대가 일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Seltzer, 2004; Seltzer et al., 2005). 미국의 경우, 동거지속 기간이 일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동거커플의 50%가 넘는데(Raley, 2000; Seltzer, 2004) 이렇게 평균적으로 짧은 지속기간은 불안정한 관계를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거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가족제도에서 동거가 가지는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동거의 정의와 유형

동거를 정의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가 있는 두 남녀가 공동의 주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1)</sup> 그러나 간단해 보이는 이 정의도 가족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문구마다 논의의 여지를 담고 있다. 심지어 동거란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 주거에 관해서도 동거라고 정의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공유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최근 프랑스 사회의 연구에 의하면 동거한다고 보고한 응답자 커플 중에 실제로 별개의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왕래를 하고 숙식을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Regnier-Loilier, Villeneuve-Gokalp, & Beaujouan, 2008).<sup>2)</sup>

이와 같은 정의는 그러나 횡단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동거지속기간이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가 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1) 이와 같이 정의되는 동거를 성관계가 결부되지 않은 다른 주거공동체나 기혼자의 혼외관계와 구별하기 위하여 김정석(2006) 등 한국의 가족학자들은 다소 부정확한 감이 있으나 혼전동거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가족법 분야에서는 혼외동거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는 사실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개념 모두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를 지칭한다는 뜻에서 앞에서 말한 동거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후자는 동거시작의 시점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경우이고 전자는 그런 전제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장창민, 2003; 조규창 1994).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기혼자의 혼외관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거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동거의 자세한 정의는 조사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방법에서 논의한다.

2)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동거관계를 최근 문헌에서 LTA (living together apart)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경제적 필요와 의무 등으로 공동주거를 가지고 의식주생활을 공유하지만 동거상대방에 대해 배우자라는 인식이 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Cross-Barnet & Cherlin, 2008; Regnier-Loilier et al. 2008).

사실혼 여부를 가리는 법적 소송의 과정에서는 결혼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이슈이지만, 판례이외에 문헌에서 동거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연구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Cross-Barnet & Cherlin, 2008). 선행연구들은 동거의 기간이나 동거생활의 형태, 동거의 결과 등의 여러 가지 외형적 자료를 통해서 동거를 선택하는 동기를 논의하는데(Cherlin, Burton, Hurt, & Purvin, 2004; Raley, 2001; Seltzer, 2004; Smock, 2000) 본 연구에서는 동거선택의 동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결혼예비, 결혼대안, 결혼대체, 그리고 편의동거 등이다.

예비동거(precursor to marriage)는 궁극적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결혼 전에 동거를 함으로써 배우자와 서로 잘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개인주의의 확산과 이혼의 증가 등의 환경적 변화가 예비동거의 토양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혼인신고의 지연을 보도하는 대중매체들은 이 추세를 일단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태도로 이해한다(노원명, 2005; 박은경, 2001; 유지영, 2005; 이상균, 2007; 이태수, 2004).

대안동거(alternative to marriage)는 결혼을 성립시킬 여건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결혼의 대안 혹은 차선책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서구의 문헌에서는 동거커플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동거와 대체동거를 함께 대안동거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결혼의 여건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경우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대체 동거(substitute for marriage)는 결혼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성을 억압한다든지 남성에게 과도한 부양의 의무를 지게 한다든지 하는 이유로 가족제도를 부정하고 그 대안으로 동거를 선택한다는 관점인데, 서구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런 관점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체 동거자들 중 극소수라고 한다(Seltzer 2004; Smock 2000). 편의동거(cohabitation for convenience)는 결혼 등의 장기적인 관계를 약속하지 않고 주로 경제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인데, 결혼의 대안이라고 하기보다 독신생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Rindfuss & VandenHeuvel 1990).

그러나 이러한 네 유형은 개념적인 분류이고, 개별적 동거 케이스는 어떤 한 유형으로 단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혼의 의사가 변화할 수도 있고, 두 당사자간에 동거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2. 연구문제: 동거자 특성 연구 및 동거유형 추론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전국적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거자의 특성 혹은 동거의 결정요인(determinants)을 살펴보는 것이다. 동거자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문화적 특성을 기혼자, 미혼자, 및 이혼(사별)자 집단들과 각각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문제는 탐구적 과정으로서 동거자의 특성을 통하여 어떤 유형의 동거가 주류를 이루는지 추정하고 나아가 동거가 현재 우리 가족제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동거자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독립변수 중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생존여부,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등의 가족가치관, 이전 결혼여부 및 종료사유 등이 포함되었다. 기혼자와의 비교에서는 배우자 특성의 조합도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는데, 연령과 교육수준의 조합이 남편우위인지 부인우위인지를 고려하였다.

동거 결정요인에 관한 다음 몇 가지 가설들은 동거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동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가정한다. 가족가치관이 진보적일 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을 때, 이전 결혼이 이혼으로 끝났을 때, 동거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의 생존은 기존의 가족제도 질서를 지키려는 규범적 통제력과 결혼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장경섭 외, 2006: 59; Rosenfeld & Kim, 2005). 초혼이 이혼으로 끝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즉, 이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의 융화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 결혼생활을 유지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지가 없어서, 결혼보다는 동거를 택할 수 있다(두리모아, 2007).

동거자 특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동거에 대한 체계적 연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연구에는 동거자특성을 통하여 어떻게 동거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지 그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탐구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제시하는바 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동거자들의 특성이 대체로 기혼자들과 유사하다면, 대부분의 동거가 예비동거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혼자들과 유사하다면 편의 동거일 가능성이 높다. 기혼자나 미혼자와 모두 상이한 특성을 나타낸다면 대안동거일 가능성이 높다.<sup>3)</sup>

3) 이 가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예비동거를 택하는 남성은 기혼남성과 유사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대안동거나 편의동거를 택하는 남성은 기혼남성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편의동거나 대안동거를 택하는 남성은 기혼남성에 비하여 비취업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독신 남성과는 차이가 없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가설을 배우자 조합의 측면에서 다시 서술한다면, 예비동거의 경우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 Ⅲ. 연구방법

#### 1. 자료출처와 동거의 측정

혼인신고자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구청이나 동회에서 신고함으로써 결혼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신고서에는 두 배우자의 연령, 주소, 교육, 직업, 혼인종류(초혼, 이혼 후 재혼, 사별 후 재혼) 등 개인특성과 함께 결혼신고 연월일과 실제결혼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결혼 연월일은 1997년부터 신고서양식에 포함되었는데 “동거를 시작한 연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법무부, 호적신고양식 제6호, 혼인신고서). 통계청에서는 매년 혼인신고 전수 자료를 연구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혼인신고자료는 법적으로 혼인을 신고한 부부만 기록되는 자료이므로 현재 동거중인 배우자들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에서 신고날짜가 실제로 동거(co-residence)를 시작한 날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를 동거생활(cohabitation)을 거쳐서 결혼한 부부라고 정의하였다.<sup>4)</sup>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함의는 혼인신고가 지연될수록 동거관계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혼인신고자료에 나타난 동거의 통계는 실제 일어나는 동거건수의 일부분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혼인신고에서 관찰되는 동거가 주로 예비동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예비동거 중에서도 일부만 혼인신고자료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동거나 편의동거를 포함하면 실제 훨씬 더 많은 동거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회통계조사자료: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 조사는 전국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사용하는데, 2006년 표본은 약 33,000가구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표본 가구 내에 살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다. 조사 부문은 매년 반복되는 11개 고정부문과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이 중 주기적으로 반복

조합이 전통적인 남성우위혼(hypergamy)이 주류를 이룬다. 만일 여성우위혼(hypogamy)이나 동등한 남녀지위의 조합이라면 대안동거를 의미한다. 또한, 배우자간의 현격한 나이 차이도 예비동거보다는 대안동거와 상관관계가 높다. 이러한 가정들은 검증할 수 있는 예측이 아니라, 결과 해석을 돕기 위하여 세워진 전제조건이다. 후속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4) 본 연구자는 18개월 혹은 그 이상의 지연은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로 간주하였다. 예비 분석에 의하면 12개월이나 24개월 등 다소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도 분석결과의 유형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되는 특별부문으로 구성되는데, 2006년에는 보건, 가족, 사회참여, 노동 등 4개의 부문이 특별조사에 포함되었다(통계청, 2006).

2006년 조사에서는 혼인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다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두 남녀가 서로 “배우자”라고 응답하지만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동거자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식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동거 중 어느 시점에서 하였는지 등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되지 않았다.

## 2. 분석방법

혼인신고자료: 본 연구에서는 1997년에 동거를 시작한 부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의 혼인신고자료에서 실제결혼 연월일(즉, 동거를 시작한 날)이 1997년인 부부들을 추출하여 전체 표본으로 삼고, 혼인신고 연월일이 실제결혼 연월일과 18개월 이상 차이 나는 부부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령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거시작 당시 부인의 연령에 따라 5세 단위의 하위표본으로 나누었고, 결과논의에서 25-29세와 35-39세 표본을 비교하였다.<sup>5)</sup> 각 연령집단에서 부부의 교육수준 조합별 결혼종류 조합별로 동거(즉, 혼인신고 지연)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부부의 교육수준은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분류를 바탕으로, 어느 한 배우자라도 중학교이하, 모두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조합, 모두 대학교 교육을 받은 집단 등으로 분류하였다.<sup>6)</sup> 혼인종류별로는 이 결혼이 배우자 모두에게 초혼인 경우, 한 배우자에게 이혼 후 재혼인 경우, 두 배우자 모두에게 이혼 후 재혼인 경우로 나누었다. 사별 후 재혼인 부부들은 그 사례수가 적어서 백분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혼인신고자료는 최종적으로 혼인에 도달한 커플들만 관찰되므로 동거추세에 대한 보충적 자료로 활용되었고, 동거유형에 관한 추론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회통계조사: 먼저 혼인상태별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다변인 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동거자 개인 혹은 커플특성을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집단과

5) 예비분석에서 다른 연령집단도 분석하였는데 제시된 두 연령집단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일관성 있게 관찰되었다. 즉 30-34세 집단은 25-29세와 35-39세 집단의 중간적 경향을, 40-44세 집단은 35-39세의 경향을 연장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두 연령집단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6) 도표에서는 이 네 집단을 중-중, 고-고, 고-대, 대-대라고 약칭하였다.

각각 비교하였다.<sup>7)</sup> 비교되는 특성은 비교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기혼자집단과의 비교에서는 배우자 각각의 특성뿐 아니라 두 배우자 특성의 조합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은 먼저 개인별로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교육의 4개 범주로 분류하고 배우자간 교차표를 작성하여 16개 조합의 빈도수를 확인한 후 부인우위부터 부부평등, 남편우위까지 최종 여섯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부인이 남편보다 2 수준이상 높은 경우 (즉, 부인 대학교 남편 고등학교이하, 부인 초급대학 남편 중학교이하, 여기에 부인 고등학교 남편 중학교이하도 포함하였음), 부부 모두 중학교이하 (부인 중학교이하 남편 고등학교도 포함), 부부 모두 고등학교 (부인이나 남편 어느 한쪽이 초급대학교육을 받은 경우도 포함), 부부 모두 초급대학 이상, 남편 대학교 부인 고등학교, 남편 초급대학 이상 부인 중학교 이하 등이다. 마지막 두 범주에서는 남편의 교육이 부인보다 2수준 이상 높다. 예비분석의 결과 연령층에 따라 교육수준의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서 부부 모두 중학교이하와 모두 고등학교의 두 범주는 각각 청년층(부인 39세 이하)과 중년층(부인 40세 이상)으로 세분하였다.

연령 차이는 통상적 나이차이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세 범주로 나누었다: 부인이 남편보다 3세 이상 많은 커플, 남편이 부인보다 10세 이상 많은 커플, 남편과 부인의 연령 차이가 -2 내지 9세인 커플.<sup>8)</sup>

취업상태는 취업과 비취업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생존여부는 부부 각각 양부모 모두 생존, 한 부모 생존, 양부모 모두 사망으로 분류하였다. 이 질문은 응답자가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일 경우에만 조사되었으므로 응답자가 가구원일 경우 미상으로 처리되었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 등 문항에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였다. 작

7) 본 연구에서 기혼자(currently married)는 현재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미혼자(never married)는 한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 과거기혼자(previously married)는 이혼을 하였거나 사별한 사람을 가리킨다. 독신자(unmarried or single)는 미혼자와 과거기혼자를 모두 포함한다. 논의의 편리함을 위하여 동거커플도 기혼부부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남편으로 여성은 부인으로 호칭한다.

다변인 분석에서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의 결혼상태별 집단과 동거자를 한 모델에서 multinomial logit으로 비교하지 않고 각각 binomial logit으로 따로 비교하였는데 이는, 첫째, 동거자를 1로, 각각의 비동거자 집단을 0으로 하여 동거자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고, 둘째, 비교집단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독립변수로 제한하였다면 표 2-4에서 제시된 binomial logit 결과는 동거자를 비교집단으로 한 multinomial logit의 결과와 부호만 반대일 뿐 계수의 수치는 같았을 것이다.

8) 예비 분석에서 보다 세분된 연령차 범주들을 고려하였으나 그 효과에 큰 차이가 없는 중간범주들을 최종분석에서 하나로 묶었다.

은 점수문항의 긍정적인 태도는 기존의 가족제도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보수적 태도로, 큰 점수 문항의 부정적인 태도는 기존의 가족제도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진보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등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작은 점수 즉 부정적인 태도는 보수적인 태도로, 점수가 커질수록 보다 진보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그 밖의 독립변수들로는 부인의 연령과 연령제곱, 남편의 학교 중퇴여부가 포함되었다. 미혼자나 이혼자와의 비교에서는 성별로 집단을 나누어서 다변인 분석을 시도하였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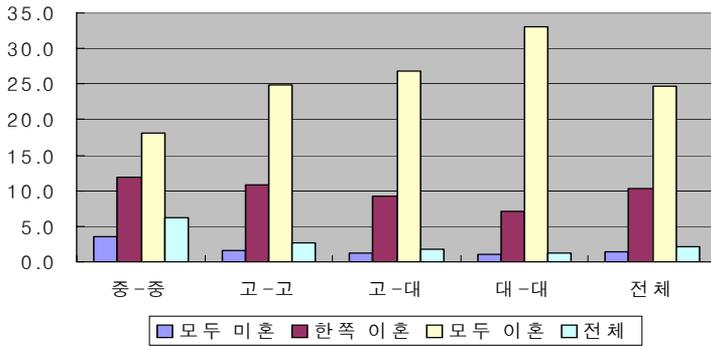
## IV. 연구결과

### 1. 혼인신고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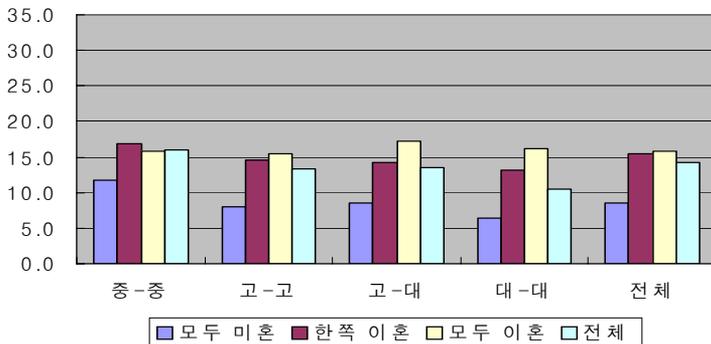
1997년 동거(coresidence)개시 당시 부인이 25-29세와 35-39세인 두 연령집단의 표본에서 혼인신고가 동거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한 부부의 백분율을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두 연령층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두 집단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신고 지연비율이 낮다. 결혼종류별로 다시 세분하여보면 두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연비율이 낮아지지만, 두 부부가 모두 이혼 후 재혼인 경우에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지연비율이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부인연령 25-29세 집단에서는 두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고지연비율이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 한 사람이 이혼 후 재혼인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초혼인 경우와 두 사람 모두 이혼 후 재혼인 경우의 중간적 경향을 보여서, 지연비율이 전자보다는 높고 후자보다는 낮으며,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약간 감소한다.

9) 독립변수로는 개인특성만 고려되었는데 기혼자 집단과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과 학교중퇴여부, 취업상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었다. 부모생존여부는 응답자가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일 경우에만 질문하였으므로 현재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의 경우 동거여부에 따라 정보의 미상여부가 결정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 혼인신고가 동거개시일부터 18개월 이상 지연된 부부 비율:  
학력별 과거 결혼상태별 (동거개시 당시 부인 연령 25-29세)



<그림 2> 혼인신고가 동거개시일부터 18개월 이상 지연된 부부 비율:  
학력별 과거 결혼상태별 (동거개시 당시 부인 연령 35-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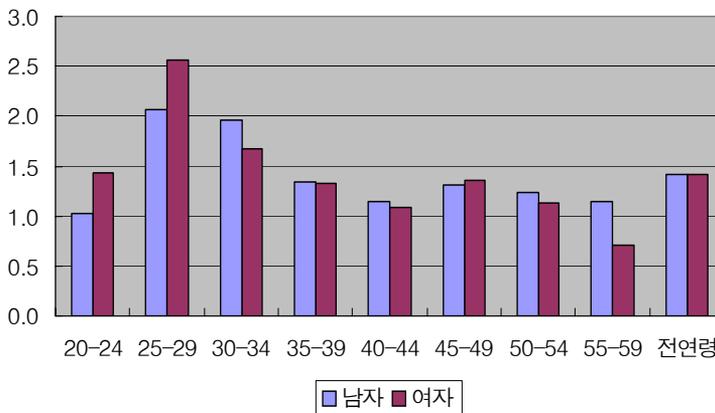
두 연령집단의 중요한 차이점도 관찰된다. 첫째, 35-39세에 동거(coresidence)를 시작한 집단보다 25-29세에 시작한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신고지연비율이 훨씬 낮다(각각 14.1%, 2.1%). 둘째, 결혼종류에 따르는 지연비율의 차이는 35-39세에 동거를 시작한 집단보다 25-29세에 동거를 시작한 집단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 25-29세 집단에서 두 사람 모두 초혼인 경우 전체교육수준 통틀어 지연비율은 1.4% 정도인데, 두 사람 모두 이혼 후 재혼인 경우 지연비율은 24.7%이다. 반면, 35-39세에 동거를 시작한 집단에서는 두 사람 모두 초혼일 경우에

도 신고지연비율이 8.5%에 이르고, 두 사람 모두 이혼 후 재혼인 경우 15.8%이다.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연령층의 결과도 일관성이 있었다. 동거를 시작한 나이가 많을수록 표본전체 지연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혼인종류에 따른 신고지연비율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 결과들은 동거의 추세가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의 한 측면이라는 선행연구의 가설을 확인하여 준다. 즉, 이혼경험이 동거를 촉진하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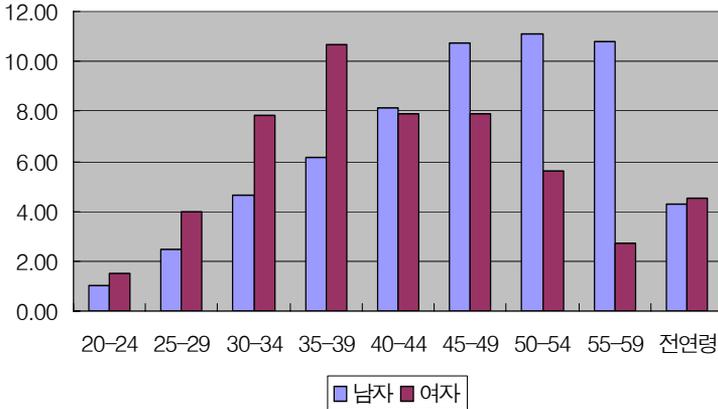
## 2. 사회통계조사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결혼커플과 동거커플의 비교에서는 부인의 연령을 20-59세로 제한하였고, 미혼자나 이혼자와 동거자의 비교에서는 남녀 각각 응답자의 연령을 20-59세로 제한하였다. 우선 결혼상태의 분포를 보면, 동거자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남녀 각각 약 1.4% 정도로 미미한 정도이다(그림 3). 연령별로 보면 기혼자 수가 적고 미혼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동거비율이 높은 편이다(그림 3). 그러나 결혼한 사람을 제외하고 독신자와 동거자를 포함한 표본에서 보면 동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 4.3% 여자 4.5%로 주목할 만하다(그림 4).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성 독신자(동거자 포함)의 경우 40대 후반과 50대에서 10% 이상이 동거상태이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도 6~8%가 동거상태이다. 여성독신자(동거자 포함)

<그림 3> 각 연령별 동거자 백분율: 전체 표본 중에서



&lt;그림 4&gt; 각 연령별 동거자 백분율: 독신자 표본 중에서



의 경우 30대 후반에서 10% 이상이 동거상태이며 주변 연령 즉 30대 초반과 40대에서도 8% 가량이 동거상태이다(그림 4). 미혼자 인구가 많은 20대에 비하여, 남녀 모두 초혼이 이혼이나 사별로 끝난 중년에 독신자 대비 동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동거 파트너를 “배우자”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만 동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대안동거나 예비동거가 주로 관찰되었고 편의동거는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편의동거까지 포함한 실제 동거자 비율은,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앞 도표들에서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 독립변수들의 성별 결혼상태별 표본분포는 <표 1>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 남성 모두에 있어서 동거자의 평균연령은 기혼자보다 적고 미혼자보다 많다. 더 중요한 결과는 동거자 연령의 표준편차가 다른 세 집단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미혼, 결혼, 이혼집단의 연령분포에 비하여, 동거자는 모든 연령에 고루 분포되어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동거자의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족가치관 등 다른 변수의 특성은 연령분포에서 시사된바와 같이 대체로 기혼자와 미혼자의 중간에 위치한다.

동거커플과 결혼커플의 경우 성별 개인특성뿐 아니라 배우자간 연령차이와 교육수준조합의 분포도 제시하였다. 배우자간에 연령차이가 큰 커플의 비율이 결혼에 비해 동거의 경우에 훨씬 높다. 부인연령이 남편보다 3세 이상 많은 부인우위 유형이 결혼커플에서는 1.5%인데 비해 동거커플에서는 10%에 달한다. 교육수준에서도 부인우위 유형이 결혼에 비해 동거의 경우에 높다 (3.9%,

<표 1> 사회통계조사 표본의 특성: 백분율 (연령과 가족가치관은 평균)

변수	동거커플		결혼커플	미혼자	이혼자
여자 (표본수)	(340)		(16592)	(4941)	(937)
연령 (연령 범위) (연령 표준편차)	37.0 20-59 10.2		42.3 20-59 8.7	26.2 20-59 5.8	44.2 20-59 7.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1		27.2	1.4	35.0
고등학교	50.6		47.8	20.8	50.8
초급대학	11.2		8.7	30.8	5.5
대학교	14.1		16.2	47.0	8.6
재직상태					
졸업	92.6		95.7	75.2	93.0
재학	1.5		0.9	18.6	0.6
중퇴	5.9		3.5	6.2	6.4
취업여부: 취업 비취업	62.9 37.1		54.4 45.6	68.5 31.5	72.7 27.3
진보적 가족 가치관					
결혼에 부정적 태도	2.4		2.3	2.4	2.7
이혼에 긍정적 태도	2.6		2.4	2.7	2.9
남자배우자/남자 (표본수)	(340)	(322)	(16592)	(6187)	(797)
연령 (연령 범위) (연령 표준편차)	39.9 18-73 11.6	38.7 20-59 10.2	45.7 20-80 9.4	28.6 20-59 6.5	45.5 20-59 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7	16.8	20.3	5.2	36.1
고등학교	49.1	51.6	42.4	28.2	46.5
초급대학	12.1	12.7	8.1	23.3	5.6
대학교	19.1	18.9	29.2	43.3	11.7
재직상태					
졸업	89.7	89.1	94.1	64.2	87.1
재학	0.9	0.6	0.8	17.3	0.4
중퇴/휴학	9.4	10.2	5.1	18.5	12.5
취업상태: 취업 비취업	83.5 16.5	83.9 16.1	89.8 10.2	63.1 36.9	77.2 22.8
진보적 가족 가치관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	2.1	2.1	1.9	2.1	2.3
이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	2.4	2.4	2.1	2.4	2.6
커플 특성					
남편과 부인 연령 차이					
부인 3세이상 많음	10.3		1.5		
-2~9세 차이	79.1		95.2		
남편 10세이상 많음	10.6		3.3		

&lt;표 1 계속&gt; 사회통계조사 표본의 특성: 백분율 (연령과 가족가치관은 평균)

변수	동거커플	결혼커플	미혼자	이혼자
표본수	(340)		(16592)	(4941)
남편과 부인 교육수준 차이				
부인 2수준 더 높음	7.4		3.9	
부부 중학교이하	22.9		26.5	
부부 고등학교	45.3		36.8	
부부 초급대학 이상	17.6		21.7	
남편 대학교 부인 고등학교	5.6		10.4	
남편 초급대 이상 부인 중학교 이하	1.2		0.7	

7.4%). 결혼커플과 동거커플간의 이런 차이가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에는 다변인 로짓 분석을 실시한다.

### 3. 사회통계조사 자료의 다변인 로짓 분석

**결혼커플과의 비교:** 이 분석에서는 결혼한 커플과 동거하는 커플들만 표본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커플이 동거하면 1, 결혼하였으면 0의 점수를 부과하였고 다변인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동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검사하였다. 결과는 <표 2>에서 odds ratio로 제시하였다. 먼저 부인연령은 동거와 포물선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20세에서 결혼대비 동거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과 함께 점차 감소하다가 50대에서 다시 약간 증가한다.<sup>10)</sup> 남편과 부인간의 연령차이의 효과는 앞의 표본특성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부인이 3세 이상 많은 커플들이 보편적인 연령차이(즉 -2에서 9세)의 커플들보다 동거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동거의 odds가 10.5배이다). 남편이 10세 이상 많은 경우도 -2~9세의 차이보다 동거의 비율이 높다(동거의 odds가 2.4배).

부부 교육수준효과 분석에서는 두 사람 모두 초급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부부를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남편보다 2 단계 높은 커플들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동거비율이 훨씬 높다 (동거의 odds가 약 2.7배). 중학교학력의 부부의 동거비율은 청년층(부인연령 20-39세)에서는 비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중년층(부인연령 40-59세)에서는 비교집단보다 월등하게 높다 (동거의 odds가 약 4배). 고등학교학력 부부의 동거비율은 두 연령층 모두에서

10) 연령과 연령제곱의 효과는 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로짓계수(coefficient)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 보았다 (Agresti & Finlay 1997).

<표 2> 결혼커플과 비교한 동거커플의 특성: 로짓 분석(부인 연령: 20-59)

변수	Odds Ratio
부인연령	0.61**
부인연령제곱	1.005**
남편과 부인 연령 차이	
부인 3세이상 많음 (-2~9세 차이)	10.43**
남편 10세이상 많음	2.40*
남편과 부인 교육수준 차이 <sup>1)</sup>	
부인 2수준 더 높음	2.71**
부부 중학교이하 & 39세 이하	0.67
부부 중학교이하 & 40세 이상	3.97**
부부 고등학교 & 39세 이하	1.52*
부부 고등학교 & 40세 이상 (부부 초급대학 이상)	2.83**
남편 대학교 부인 고등학교	1.00
남편 초급대학 이상 부인 중학교 이하	6.89**
남편 학교 재적상태 (졸업, 재학)	
중퇴 & 부인 39세 이하	2.20*
중퇴 & 부인 40세 이상	0.73
부부 취업상태	
남편 취업	0.57**
부인 취업	1.84**
부모 생존여부	
남편부모 (양부모 생존)	
한부모 생존	1.25
양부모 사망	1.74**
모름=가구주나 가구주배우자 아님	1.15
부인 부모 (양부모 생존)	
한부모 생존	1.22
양부모 사망	1.63**
진보적 가족 가치관	
남편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1.42**
부인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1.15^
표본수 (결혼+동거 커플)	16,932
LR chi2 (df)	489(23)
Pseudo R2	0.15
동거자 백분율	2.0

주: 1) 자세한 분류내용은 본문을 참조할 것.

^ p<.10, \* p<.05, \*\* p<.01

자료: 2006 사회통계조사.

비교집단보다 높은데, 동거의 odds가 청년층에서는 약 1.5배, 중년층에서는 약 2.8배로 나타났다. 남편우위의 나머지 두 범주에서 동거확률이 매우 다르다. 남편 대학교 부인 고등학교의 조합은 비교집단과 동거비율이 거의 같다. 그러나 남편이 초급대학이상의 교육을 받고 부인이 중학교이하의 교육을 받은 부부의

경우 동거의 odds가 무려 7배에 달하는데, 이 결과는 사례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연령층을 나누지는 않았으나 주로 중년층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연령차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서도 부인우위일 경우에 동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남편우위도 그 차이가 현저한 경우 역시 동거비율이 높았다. 이는 부부 특성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경우 동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준다. 그 외, 부부모두 고등학교학력(고등학교와 초급대학의 조합도 포함)인 경우 동거확률이 높은 편이고, 중년층에서는 저학력자, 즉, 부인이 중학교이하일 때 동거비율이 높다.

남편이 학교를 중퇴한 경우 졸업한 경우에 비하여 동거의 비율이 높는데 이 결과는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층에 해당된다. 남편의 취업은 동거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부인의 취업은 동거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취업과 결혼상태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모두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성의 경우 결혼과 함께 퇴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동거의 경우에는 결혼에 비하여 퇴직할 확률이 낮은 것 같다.

부모의 생존여부도 예상대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동거의 비율이 높다. 자녀의 결혼이 아직도 부모의 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생존은 동거라는 반 규범적인 결합을 반대하는 사회적 통제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결혼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장경섭 외, 2006).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고, 이혼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 즉, 진보적 가치관이 동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편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족가치관이 남성보다 더 양성평등적이라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보면(유계숙, 2005), 남성의 태도변화가 가족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요인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결혼부부와 동거부부를 비교한 이 결과들은 연령층에 따라 동거의 기능이나 결정과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보다 중요한 점은 두 연령층 모두에서 동거부부의 특성이 결혼부부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혼부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거는 단순히 결혼에 이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기 보다는 결혼과는 그 기능이 다른 장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에서) 규범적 부부조합유형인 남편우위혼과 반대되는 부인우위혼(hypogamy)이나 아니면 남편우위혼(hypergamy)이라도 남편우위가 극심한 경우에 동거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 동거는 결혼의 대안 혹은 차선책으로 선택되는 대안동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미혼남녀와의 비교:** <표 3>에서는 미혼자와 동거자만을 표본으로 하여 동거자의 특성을 검사하였다. 종속변수는 응답자가 동거하면 1, 미혼이면 0의 점수를 부과하였고, 표본을 성별로 분리하여 다변인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2에서와 마찬가지로 odds ratio로 제시하였다. 먼저 연령의 효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20세 이후 59세까지 동거비율이 계속 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여성의 경우는 20세 이후 증가하다가 50세부터는 다시 감소한다. 미혼인구가 연령과 함께 감소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미혼자 대비 동거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표 2>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중학교이하의 저학력 중년여성의 동거비율이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동거비율이 낮았다. 취업여부는 기혼자와의 비교에서와 반대의 관계를 보여준다. 즉, 남성의 경우 취업은 동거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여성의 경우 취업은 동거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다르게 표현하면, 남성동거자는 미혼남성보다 취업률이 높고, 여성동거자는 미혼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

<표3> 미혼남녀와 비교한 동거남녀의 특성: 로짓 분석(연령: 20-59)

변수	남자	여자
	Odds Ratio	Odds Ratio
연령	0.98	1.45**
연령제곱	1.002**	0.996**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 39세 이하	0.77	0.39
중학교 이하 & 40세 이상	0.35**	2.90**
초급대학	0.60**	0.26**
대학교	0.52**	0.19**
학교 재적상태(졸업)		
재학	0.14**	0.40^
중퇴	0.90	1.54
취업	2.03**	0.68**
진보적 가족 가치관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	0.82*	0.79*
이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	0.94	0.88
표본수 (미혼자+동거자)	6,509	5,281
LR chi2 (df)	542(11)	746(11)
Pseudo R2	0.21	0.30
동거자 백분율	5.0	6.4

주: ^ p<.10, \* p<.05, \*\* p<.01

자료: 2006 사회통계조사.

결혼에 대한 진보적 태도는 동거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결혼에 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결혼에 부정적인 사람보다 미혼으로 남아있지 않고 동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 결과는 진보적 가족가치관이 동거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정하는데, 동거가 결혼을 부정하여 선택하는 대체동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로, 기혼자와의 비교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는 동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요약하면, 연령을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 취업, 가족가치관 등에서 동거자는 대체로 기혼자와 미혼자의 중간에 위치한다. 동거남성은 기혼자보다는 취업률이 낮고 미혼자보다는 취업률이 높다. 동거여성은 기혼자보다 취업률이 높고 미혼자보다는 낮다. 또한 동거자는 기혼자에 비하여는 이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결혼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없고, 미혼자에 비하여는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만 이혼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없다. 동거자는 기혼자보다는 교육수준이 대체로 낮은 편이고, 미혼자에 비하여는 고등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이 특히 많은 편이다.

**이혼남녀와의 비교:** <표 4>에서는 동거자를 이혼한 사람들과 비교하였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자와 동거자만을 추출한 후 동거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인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연령과 이혼자대비 동거비율과의 관계는 남녀 모두 포물선을 그리는데, 20세에서 동거비율이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였다가 50세 전후에서 다시 증가한다. 이혼자 수가 많은 30대와 40대에 동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수준의 효과는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청년층에서는 초급대학이상의 고학력자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동거할 확률이 높다. 이런 유형은 남녀 양성에서 비슷하지만 남성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초급대학이상의 고학력자는 기혼자나 미혼자와 동거자를 비교한 표본에서는 동거비율이 낮았었는데,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청년층에서, 특히 남성의 경우, 이혼자들의 학력이 기혼, 미혼, 동거를 통틀어 가장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에서 기혼자나 미혼자와의 비교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중년층에서는 고등학교학력의 남성들의 동거비율이 높은 편이고, 중년층 여성의 경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동거비율이 현저히 낮다.

학교를 중퇴한 남성은 졸업한 사람보다 동거확률이 현저히 낮다. 다르게 말해 중퇴한 남성은 이혼자일 확률이 높다.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하여 동거비율이 낮다. 즉, 이혼여성이 동거여성보다 취업률이 높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또 이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이혼자 대비 동거비율이 높다. 앞의 기혼자나 미혼자와의 비교와 종합하면, 이혼자가 가장 진보적 가족

<표4> 이혼 사별자와 비교한 동거남녀의 특성: 로짓 분석(연령: 20-59)

변수	남자	여자
	Odds Ratio	Odds Ratio
연령	0.51**	0.65**
연령제곱	1.007**	1.004**
교육수준 (39세 이하 & 고등학교)		
39세 이하 & 중학교 이하	0.74	0.38
39세 이하 & 초급대학	2.33*	1.35
39세 이하 & 대학교	3.24**	1.53
40세 이상 & 중학교 이하	1.03	1.17
40세 이상 & 고등학교	1.78^	0.77
40세 이상 & 초급대학	1.00	0.50
40세 이상 & 대학교	1.62	0.19*
학교 재적상태(졸업)		
중퇴	0.44**	0.76
취업	1.11	0.59**
진보적 가족 가치관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	0.78*	0.70**
이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	0.72**	0.67**
표본수 (이혼사별자 + 동거자)	1,119	1,277
LR chi2 (df)	256(13)	309(13)
Pseudo R2	0.19	0.21
동거자 백분율	28.8	26.6

주: \* p<.05, \*\* p<.01

자료: 2006 사회통계조사.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혼자는 결혼에 대한 태도는 가장 부정적이고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장 긍정적이다. 다음으로 미혼자, 동거자, 기혼자의 순서로 진보적이다.

## V. 논의 및 제언

지난 십여 년간 이혼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진 나라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반면 결혼율과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대체출산력의 반 정도 밖에 미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한국의 가족환경 속에서, 대중매체들은 혼인신고 지연 등을 포함하여 동거(cohabitation)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는 혼인신고자료와 2006년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동거가 한국가족에서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였다. 두 자료 모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동거커플만 관찰되었다.

통계적 분석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신고 자료에 의하면 초혼의 경우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에게서 신고지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이혼 후 재혼의 경우 혼전동거의 빈도는 학력과 관계가 없고 초혼보다 대체로 높다. 초혼의 경우 동거시작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신고지연 비율이 높았다.

둘째,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혼자 부부와 비교하였을 때, 연령이나 교육수준면에서 부인우위인 경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남편우위의 배우자조합에 비하여 동거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

셋째, 부인우위와 정반대로 연령이나 교육수준면에서 남편우위이지만 그 차이가 극심한 경우에도 보다 통념적인 남편우위에 비하여 동거할 확률이 높다. 부인우위이든지 현저한 남편우위이든지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배우자조합이 아닐 경우 동거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인과관계의 방향이 그리 자명하지는 않다. 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배우자조합이므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동거에 머무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결혼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배우자를 동거에서는 받아들여지게 된 것인지는 후속연구의 과제이다.

넷째, 연령분포를 보면 동거자는 기혼, 미혼, 이혼 등 다른 결혼상태의 인구분포에 비하여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다. 이 결과는 동거가 초혼을 하기 전 결혼이나 독신의 대안이 되기도 하고 또 초혼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역시 재혼이나 독신의 대안으로 선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배우자간 교육수준이 비슷한 부부들의 경우를 보면 초급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등학교나 중학교이하 학력자보다 동거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 미혼자와 비교할 때도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초급대학이상 학력자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이하 학력자들보다 동거할 확률이 낮다.

여섯째, 동거자의 취업률은 기혼자와 미혼자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성별에 따라 반대의 유형이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동거자의 취업률이 기혼자보다는 낮고 미혼자보다는 높다. 이혼자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여성 동거자의 취업률은 기혼자보다 높고 독신자보다 낮다. 양성의 유형을 종합하면 동거부부에서는 결혼부부에 비하여 전통적 성역할분담이 적게 일어나는 반면 맞벌이를 하거나 여성혼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동거자는 대체로 기혼자보다 진보적이고 미혼

자보다 보수적이다. 그러나 동거자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기혼자와 차이가 없고, 이혼에 대한 태도는 미혼자와 차이가 없다.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이러한 결혼상태별 차이는 남녀 양성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이 결과들은 일단 서구문헌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틀을 대체로 수용한다. 첫째, 동거는 이혼의 증가 등 가족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되어있다. 둘째, 남성의 현재 혹은 잠재적 경제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결혼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여성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자원과 동거의 관계가 남성에서 만큼 뚜렷하지 않다. 셋째, 부부간 취업, 교육수준, 연령차이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결혼부부보다 동거부부에서 성역할 평등 혹은 전통적 성역할의 반전(reversal)이 더 활발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학력, 취업, 가족가치관, 연령 등 동거커플들의 특성이 결혼부부와 특별히 유사하지 않다는 면에서, 예비동거보다는 대안동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찰된 동거라고 할지라도 결혼부부와 그 특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외형적으로는 예비동거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결혼의 연장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당분간 두고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말하자면 이유 있는 신고지연인 것이다. 따라서 대안동거의 성격을 띠는다고 보아야한다. 즉, 현재 한국사회에서 동거는 어떤 면에서든 결혼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예비동거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커플이 사전에 적합성을 검사하는 과정이므로 결혼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안동거는 결혼의 여건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결혼의 차선책으로 선택된 것이므로 결혼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따라서 대안동거가 동거의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동거관계, 나아가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동거연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혼이나 동거파탄 등 가족해체가 자동적으로 당사자나 자녀들의 안녕에 해가 된다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족해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에서 어떤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해본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성격상 비교적 안정적인 동거관계만 관찰되었다. 상대방을 배우자라고 인식하는 동거관계(사회통계조사)나 결혼으로 연결된 동거(혼인신고조사)만이 관찰되었다. 모든 동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표본에 포함된 동거자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연령별로 세분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의 차이가 일부 관찰되었는

데 좀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측면의 자료가 결여되어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는지 동거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등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 후속연구에는 이러한 동거의 과정뿐 아니라 동거의 결과, 즉, 동거를 시작한 커플 중 몇 퍼센트가 각각 결혼으로 연결되거나 파탄을 맞이하는지, 동거의 지속기간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종단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겠다. 넷째, 앞으로는 당사자들이 동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도 조사되어야 하겠다.

자료의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 동거의 의미를 추론하였다. 그 추론에 의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이 단지 조심스러워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라는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동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그 원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 참고문헌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도세록·이건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6-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노원명 (2005) “혼인신고? 2~3년 살아보고” 《매일경제》 2005. 3. 28.
- 두리모아 (2007) “초혼 ‘신혼 여행후’ 재혼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겠다” 《전북 매일신문》 2007.3.29
- 민법, 친족상속편 [http://root.re.kr/root/law\\_civil\\_4.htm](http://root.re.kr/root/law_civil_4.htm) 호적법 <http://root.re.kr/root/h5.htm> (접속 2007)
- 박은경 (2001) “동거는 빨리, 혼인신고는 천천히” 《주간동아》 Vol 274 2001. 3. 6.
- 법무부 (여러 해) 호적신고 양식 제6호 혼인신고.
- 신민섭 (2007) “연예인들 신 결혼 풍속도” 《일요신문》 2007.8.10.
- 유계숙 (2005) “가족의 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과 문화》 17(2): 211-233.
- 유지영 (2005) “‘이혼 할지 모르니 1년 살아보고...’ 의식 확산” 《헤럴드경제》 2005. 3. 12.
- 이상균 (2007) “신세대 新결혼풍속도, ‘결혼식YES, 혼인신고 NO’” 《서울파이낸스》 2007. 9. 9.

- 이태수 (2004) “혼인신고 ‘미루기’” 《매일신문》 2004.7.13
- 장경섭 · 김규원 · 김승권 · 김홍주 · 은기수 (2006) 《경제 · 사회적 양극화 시대의 가족정책》 연구보고 2006-13, 여성가족부.
- 장창민 (2003) 《사실혼과 혼외동거에 관한 일고: 재산상 보호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17(2): 57-85.
- 조규창 (1994) 《동거녀의 재산분할청구권》 고시연구 94(3): 125-141.
- 통계청 (2006) 2006년 사회통계조사 개요
- Agresti, A. and B. Finlay (1997)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Prentice Hall.
- Bachrach, C., M.J. Hindin, and E. Thomson (2000) “The Changing Shape of Ties That Bind: An Overview and Synthesis” Pp. 3-18 in L. Waite, C. Bachrach, M.J. Hindin, E. Thomson, and A. Thornton (eds.)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Hawthorne, NY: Aldine.
- Bumpass, L.L. (1990) “What’s happening to the family? Interactions between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change” *Demography* 27: 483-498
- \_\_\_\_\_ and Hsien Hen Lu (2000) “Trends in Cohabitation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Family Contex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Studies* 54: 29-41
- Casper, L.M. and S. Bianchi (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American Family*. Thousand Oaks, CA: Sage
- Cherlin, A, L.M. Burton, T.R. Hurt, and D.M. Purvin 2004. “The Influence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68-789.
- Cross-Barnet, C. and A.J. Cherlin (2008) “Cohabiting on the Edge: Living Together Apar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New Orleans, LA, April 17-19.
- Giddens, A. (2000)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New York: Routledge.
- Lee, Yean Ju (2006) “Risk Factors in the Rapidly Rising Incidence of Divorce in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2(2): 113-132.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pp. 17-62, In K.O. Mason & A. M.

- Jensen (eds.)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Oxford, UK: Clarendon.
- \_\_\_\_\_ (2007)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George Ritzer (ed.)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Blackwell Publishing
- Raley, R.K. (2000) "Recent Trends and Differentials in Marriage and Cohabitation: The United States" pp. 19-39 in L. Waite, C. Bachrach, M. Hindin, E. Thomson, and A. Thornton (eds.)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Hawthorne, NY: Aldine.
- \_\_\_\_\_ (2001) "Increasing Fertility in Cohabiting Unions: Evidence fo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38(1): 59-66.
- Regnier-Loilier A., C. Villeneuve-Gokalp, and E. Beaujouan (2008) "Neither Single, Nor in a Couple: A Study of Living Apart Together in Fra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New Orleans, LA. April 17-19.
- Rindfuss, R.R. and A. VandenHeuvel (1990) "Cohabitation: A Precursor to Marriage or an Alternative to Being Singl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703-26.
- Rosenfeld, M.J. and Byung Soo Kim (2005) "The Independence of Young Adults and the Rise of Interracial and Same Sex Un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4): 541-562.
- Seltzer, J.A. (2004)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Demography, Kinship, and the Fut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November): 921-928.
- \_\_\_\_\_, C.A. Bachrach, S.M. Bianchi, L.M. Casper, P.L. Chase Landale, T.A. Diprete, V.J. Hotz, S.P. Morgan, S.G. Sanders, D. Thomas (2005) "Explaining Family Change and Variation: Challenges for Family Demograp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November): 908-925.
- Smock, P.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1-20.

## Implications of Cohabitation for the Korean Family: Cohabiter Characteristics Based on National Survey Data

*Yean-Ju Lee*

This study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increasing cohabitation for the Korean family,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habiters with those of married couples and of never-married and divorced people. Data are from the Marriage Registration Files for the years of 1997 through 2005 and Social Statistics Survey conducted in 2006.

Results from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t analysis generally confirm the predictions of the western literature. First, cohabitation is part of overall changes in the family system. Cohabitation is more prevalent among the previously married than among the never married. Seco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cohabiting men is lower than that of married men. Third, according to spouses' employment status, educational levels, and age differences, gender roles are more egalitarian among cohabiting couples than among married couples.

The finding that cohabiter characteristics are not similar to those of married couples seems to suggest that cohabitation does not simply represent a trial of marriage out of caution, unlike what most media articles assume. Instead, cohabitation may signify some unconventional circumstances forcing the couple to choose it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even temporarily. This and other conjectures discussed in this paper need to be reexamined with more rigorous data, as increasing trend of cohabitation seems to be inevitable in the coming years.

**Key Words:** Cohabitation, Cohabiter Characteristics, Cohabitation Type, Marriage Registration, Remarriage